

신 개인소득세법 시행 3년, 과도기 정책 해석 및 연장

2022년 1월

Issue 1

개요

2018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이하 "신 개인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세부문은 일련의 과도기 정책을 발표하여 일부 개인소득세 혜택 정책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종합소득 결산/납부의 효율적인 징수를 모색했습니다. 2021년 말, 해당 과도기 정책 시행 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연간 1회성 인센티브 등 개인소득세 혜택 정책 연장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42호, 이하 "42호 공고")와 <외국인 개인 보조금 등 관련 개인소득세 혜택 정책 연장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43호, 이하 "43호 공고")를 공동 발표함으로써, 만료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 과도기 정책을 명시, 현행 관련 정책이 모두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Newsflash>에서는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의 연장 상황 및 핵심 사항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신 개인소득세법 전면 시행 이후 과도기 정책은 주로 **개인소득세 혜택 정책**과 **종합소득세 정산납부 관리 정책** 두가지를 포함하며, 각각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관련 혜택 정책 연계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8]164호, 이하 "164호 공고")¹와 <재정부, 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94호, 이하 "94호 공고")²에 규정되었습니다.

개인소득세 혜택 정책 연장

164호 공고는 신개인소득세법 시행 후 우대 정책은 장기 정책과 과도기 정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간 일회성 인센티브,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정책, 외국인 개인 보조금 정책은 3년(2019년~2021년)의 과도기적 정책입니다. 42호 공고와 43호 공고에 따르면, 상기 정책은 모두 각각의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내용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64 호 공고		42 호 공고 및 43 호 공고
	과도기 정책 (2019-2021 년)	2022 년부터 적용	과도기 정책 연장
연간 일회성 인센티브	단독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합산과세	2 년 연장, 즉 2022~2023 년
상장회사 스톡옵션	단독과세	별도 명시	1 년 연장, 2022 년
외국인 개인 보조금	주택, 자녀교육비, 어학연수비에 대해 특별부가공제 또는 외국인 개인 보조금 면세 정책 선택 가능	주택, 자녀교육비, 어학연수비에 대해 특별부가공제 정책 적용	2 년 연장, 즉 2022~2023 년

주: 164 호 공고의 상기 정책은 거주자 개인에게 적용.

종합소득 연말정산 의무 면제 정책 연장

94 호 공고는 2 가지 상황, 즉 연간 종합소득이 12 만 RMB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추납 또는 정산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400RMB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연말정산 및 추납 의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2019 년과 2020 년에 적용하도록 했었습니다. 42 호 공고는 해당 정책의 집행 기한을 2023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 개인이 계속해서 연말정산 면제 혜택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요약

상기 164 호 공고와 94 호 공고의 개인소득세 과도기 정책의 연장은 거주자 납세자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련 혜택 정책과 납세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과 개인은 혜택 향유와 세무 컴플라이언스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특히 징수 관리 개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무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상기 연장된 혜택 정책을 예로 들어 보면:

연간 일회성 인센티브: 단독과세 방법을 적용하는 인센티브는 <개인이 취득한 연간 일회성 인센티브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호)³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과세방법은 각 납세자에 대해 연간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

상장회사 스톡옵션: 국가세무총국이 2021 년 10 월 발표한 <세무 분야의 “放管服(放管服)”개혁, 교육 심화 및 시장 주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몇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세총징과발[2021]69 호)⁴는 “스톡옵션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스톡옵션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자료 보고 요건을 더욱 개선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스톡옵션 개인소득세 징수 및 관리감독 역량의 지속적인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기존 스톡옵션에 대해:
 - 기업은 초기 비안 및 후속 절차의 정보 자료 제출이 규정에 따라 완수되었는지 재검토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 적시에 지역별 세무기관의 조세혜택정책에 대한 집행 방법과 비안 계획 등의 상세 요건을 파악하여 따르고, 방안 실행 시 세무 위험에 유의하며, 적시에 잘못된 세무 처리 방법을 발견 및 시정해야 합니다.

- 비상장회사, 계약통제구조(예:VIE 구조), 지분 플랫폼을 통한 스톡옵션 등 정형적이지 않은 스톡옵션방법의 경우, 주관 세무국과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관련 정책의 적용 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 스톡옵션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과학적인 스톡옵션 설계방법론을 따라야 하며, 인센티브 효율성, 상장 규칙, 개인소득세 컴플라이언스 등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 보조금: 164 호 공고는 외국인 거주자 개인이 특별부가공제 또는 현행 주택/어학연수/자녀교육비 등 보조금 면세 혜택 정책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척방문비, 이사비, 식비, 세탁비 등 기타 보조금의 경우, 현행 유효한 면세 혜택 정책에 따라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기업은 적시에 지역별 세무기관의 외국인 개인 보조금 면세 혜택 정책에 대한 비안 요건과 세무 조사 및 관리감독의 요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조속히 기존 방법을 정리 검토하고 관련 내부 지원문서, 정책 제도 및 관리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진정성, 합리성 등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할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 연말정산 의무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의무 면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고 징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정책의 적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 원천징수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원천징수 의무 요건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아닙니다. 기업은 여전히 모든 직원의 모든 급여 사항에 대해 적시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직원, 특히 중/저소득 직원이 연말정산 의무 면제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개인소득세 혜택 정책들이 연장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과도기 정책입니다. 개인소득세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은 미래 정책 발전 방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급여 제도의 조정 및 최적화를 고려하여 향후 잠재적인 정책 변화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1.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관련 혜택 정책 연계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8]164 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3/c21603684/content.html>
2. <재정부, 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94 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3/c5141234/content.html>
3. <개인이 취득한 연간 일회성 인센티브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 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3/c1306/content.html>
4. <세무 분야의 “팡관푸”개혁, 교육 심화 및 시장 주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몇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징과발[2021]69 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5170138/content.html>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TP) 최지혁 (86) (10) 6533-3676 john.j.choi@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정자현 (86) (21) 2323-8879 jaheon.jjeong@cn.pwc.com

(회계감사 & Tax) 이석원 (86) (21) 2323-8500 seok.won.y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n.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2 年 1 月 10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2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